

- 5. 建築士法令에 의하여 建築士의 免許取消 또는 事務所開設取消을 받았을 때
- 6. 3年以上 正會員 會費를 滯納하였을 때
- 第12條 ①委員會에서 決議를 하였을 때에는 5日以內에 委員長은 會長에게 그 決議事項을 報告하여야 한다
- 第13條 ①會長은 前條의 報告를 받았을 때 5日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 倫理委會 決議事項에 對한 受諾與否를 議決한다
②理事會는 倫理委員長을 參席시켜 意見의 疎述을 받아야 한다
- 第14條 ①理事會는 倫理委員會의 決定事項의 受諾與

否만 決定하며 決定事項의 內容變更은 할 수 없다
②理事會가 受諾拒否할 때는 即刻 委員會에 再審을 要求하여야 한다

- 第15條 ①徵戒決定을 받은 建築士는 徵戒通告를 받은 후 5日以內에 直接 理事會에 對하여 1회에 限해 再審請求를 할 수 있다
- 第16條 徵戒는 理事會에서 議決된 後 委員長 名義로 宣告함으로써 發効한다

附 則

- 第17條 本規程은 總會의 承認을 받은 날부터 發効한다

大韓建築士協會 倫理規約

1965年10月23日 創立總會制定
1966年9月24日 第1回定期總會一次改正

- 第1條 建築士는 委囑者의 信任을 받은 代理人이며 自己에게 맡겨진 責任과 任務를 良心과 誠意로서 遂行한다
- 第2條 建築士는 委囑者에 關하여 業務上의 秘密을 遵守한다
- 第3條 建築士는 委囑의 對象이 되는 建築物이 純粹한 建築文化와 社會福祉에 合致되지 않는다고 認定되거나 委囑者의 要素로보아 建築士들 自體의 權益을 損傷시킬 우려가 있다고 認定될 때는 業務의 委囑을 拒否한다
- 第4條 建築士는 委囑에 關한 報酬以外에는 어떠한 金品도 받지 않는다
- 第5條 建築士는 委囑者에게 事前에 報酬額制定의 原則과 記計委囑에 따르는 諸條件 또는 規約等을 啓蒙熟知시켜야 할 것이며 報酬의 割引 其他 不當한 手段으로 建築士와 競争하지 아니한다
- 第6條 建築士는 專門家로서 委囑者와 都給業者 및 納入業者間의 모든 問題를 公平하게 實際적으로 判定한다
- 第7條 建築士는 다른 建築士와 委囑者間에 交渉이 相當히 進行된 것을 알면서 그 委囑者에게 業務委囑

의 交渉 또는 그의 要請에 應하지 아니한다

- 第8條 建築士는 이미 다른 建築士에게 委囑된 일의 實施 또는 完成의 付託을 委囑者로부터 받았을 경우 當該 建築士와 委囑者 사이의 關係가 解消되었음이 建築士 相互間 또는 協會의 確認이 없이는 그 委囑을 引受아니한다
- 第9條 懸賞設計에 依한 實施設計에 있어 最高의 賞을 받은 以外의 建築士는 그 委囑을 拒否한다.
- 第10條 다른 建築士 또는 建築技術者를 僱傭하고 있는 建築士는 自己에게 委囑된 일에 對한 責任에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被僱傭者의 技術向上을 可能케 하는 便宜를 提供한다
- 第11條 建築士는 建築材料 또는 建築構造等의 廣告에 있어서 建築士의 各譽를 毀損시킬 證明書를 發付하지 아니한다
- 第12條 建築士는 自己의 事業 및 業績 또는 다른 建築士에 關하여 虛僞宣傳을 하지아니한다.
- 第13條 本倫理規約을 實施하기 爲하여 倫理委員會를 組織한다
- 第14條 建築士는 倫理委員會의 決定에 服從한다.